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7일, 전진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진숙의원)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 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한 체육청소년부가 유일한바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가 10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예산의 약 13.9%로 가족 관련 사업 예산(총예산의 69.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실질 소관 범위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여성가족부가 부 명칭과 관련된 가족, 양성평등 관련 사무 외에도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예산상으로도 청소년 정책의 비중이 양성평등 정책과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소관 사무인 ‘청소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주관 행정기관을 분명히 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청소년 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혁을 살펴보면, 체육청소년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같이 수행 기능들을 기관 명칭에 명확하게 표시하였던 사례가 있는 반면, 문화관광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명칭으로 대표적인 수행 기능이나 다른 기능들을 보다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 ‘성평등’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헌법상 양성평등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
- 성평등 기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성별공시,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과 제도 이관 필요와 청소년 진흥,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을 부처 명칭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성평등가족부의 사무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업무와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이라는 자구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